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24
----------	-----

2011년 7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1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2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2011년 7월 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복지건강본부장 이정관)

-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및 자치구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부담비율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장기요양시설 입소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자치구 상호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은
 -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리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부담하고,
 - 재가급여비용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분담하는 것으로
 - 재가급여의 부담비율은 자치구의 전년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및 재가급여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되며,
 - 시와 자치구의 부담률이 확정되면 자치구에 통보하고, 자치구에서 시 수납계좌에 입금하면 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방식으로 부담금 납부가 이루어지도록 함.

3.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김태호)

□ 총괄

- 본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및 자치구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분담비율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자치구 상호간 균형 있는 발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 세부내용

(1) 비용부담 관련 사항(안 제3조)

- 안 제3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1) 제3항에 따라 비용을 서울시와 자치구가 상호 분담하도록 하고 있음.
 - 부담금 중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부문은 시설급여 및 공단관리운영비이고, 재가급여에 대하여 시가 부담하는 비율은 30%에서 80%까지 12부문으로 차등화하고 있음.
 - 여기서 재가급여에 대한 시비부담 부분은 자치구 “기존 재정수요 충족도” 및 “재가급여 비율”을 지표로 산정하고 있음.
 - 여기에서의 재정여건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전년도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를 3단계(55% 미만, 55% 이상 ~ 75% 미만, 75% 이상)로 구분한 것이며,
 - 재가급여 비율²⁾은 4단계로 구분(100분의 3 미만,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6 미만,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9 미만, 100분의 9 이상)한 것임.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국가의 부담)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제40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면제 및 감경됨으로 인하여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포함 한다)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가 분담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부과, 징수 및 재원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자치구의 재가급여 비율 = $\frac{\text{자치구 재가급여액}}{\text{전체 재가급여액}} \times 100\%$

- 이에 근거해서 2011년도 시비부담률에 따른 자치구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시비 부담율이 30%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종로, 중구, 용산, 서초, 송파구로 나타났고, 80%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노원구로 나타났음.

〈참고〉 2011년 시비부담률에 따른 자치구 배치 현황

구 분		② 자치구의 재가급여 비율			
		100분의 3미만	100분의 3이상 100분의 6미만	100분의 6이상 100분의 9미만	100분의 9이상
①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100분의 75 이상	100분의 30 (종로, 중구, 용산, 서초, 송파)	100분의 40 (영등포)	100분의 50 (강남)	100분의 60
	100분의 55 이상 100분의 75 미만	100분의 40 (광진, 동대문, 구로, 강동)	100분의 50 (성동, 마포, 양천, 동작)	100분의 60	100분의 70 (강서)
	100분의 55 미만	100분의 50 (서대문구)	100분의 60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은평, 금천, 관악)	100분의 70	100분의 80 (노원)

- 한편, 타 복지비용과의 형평성을 살펴보면, 기초노령연금 등 다른 복지비용의 시·구 부담비율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자치구 재정 부담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동안 서울시에서 일괄 부담해왔던 것을 감안할 때, 자치구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됨.

〈참고〉 타 복지비용의 시·구 부담비율과의 비교 (총지방비 기준)

계	기초노령연금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조례안의 분담(안)
시비	51.5%	65.2%	79.1%
구비	48.5%	34.8%	20.9%

※ 시·구비 부담 : 시비 694억원(79.1%), 구비 183억원(20.9%)

- 그럼에도 서울시는 법 제정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으로 상당한 예산을 부담해왔고, 2010년도에는 737억을 지출하였고, 향후 재가급여예산은 노인인구 급증에 따라 급속히 팽창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장래 재정 부담을 감안할 때 이에 따른 비용 부담률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임.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서울시 재정 부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8년 (08.7.1~12.31)	'09 년	'10 년
금 액	25,709	66,070	73,791

(2) 기타의견

○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가 분담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41조)³⁾에서 그 분담하는 금액은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자치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서울시에서 전부 부담할 수는 없을 것임.
- 다만, 현재 자치구간에는 재정격차가 크고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도 다수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최근의 세수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 감소 등을 감안할 때, 비용 부담시기와 그 비율은 시와 자치구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자치구 의견을 조회한 바, 자치구 부담이 과중하여 자치구 부담을 반대하거나 줄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당초 비율에서 일정부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지방자치단체 간 분담비율)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가 분담하는 금액은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참고1. 2011년 시·자치구 분담내역안(조례안가결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액)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관리운영비 (7.00%)	시설급여 (45.53%)	재가급여(47.47%)			시비 부담비율(%)
				소 계	시비(26.61%)	구비(20.86%)	
합 계	87,725,960	6,137,489	39,944,688	41,643,784	23,347,487	18,296,296	
구평균	3,470,153	242,779	1,578,756	1,648,618	928,759	719,858	
종로구	972,131	68,012	475,776	428,343	128,503	299,840	30
중 구	663,815	46,442	134,857	482,517	144,755	337,762	30
용산구	1,043,461	73,003	200,966	769,492	230,848	538,644	30
성동구	1,785,681	124,930	378,820	1,281,931	640,965	640,965	50
광진구	1,775,689	124,231	684,338	967,121	386,848	580,273	40
동대문	1,893,613	132,481	661,185	1,099,946	439,979	659,968	40
중랑구	6,678,885	467,269	4,731,176	1,480,441	888,264	592,176	60
성북구	4,335,734	303,337	2,014,742	2,017,655	1,210,593	807,062	60
강북구	3,201,228	223,965	1,117,150	1,860,114	1,116,068	744,046	60
도봉구	2,016,714	141,093	468,098	1,407,523	844,514	563,009	60
노원구	12,248,061	856,900	5,385,778	6,005,384	4,804,307	1,201,077	80
은평구	7,617,005	532,901	5,008,769	2,075,335	1,245,201	830,134	60
서대문	2,116,949	148,106	790,637	1,178,206	589,103	589,103	50
마포구	2,160,044	151,121	410,293	1,598,630	799,315	799,315	50
양천구	2,592,012	181,342	689,952	1,720,717	860,358	860,358	50
강서구	6,745,533	471,931	2,497,880	3,775,721	2,643,005	1,132,716	70
구로구	1,335,583	93,440	269,185	972,957	389,183	583,774	40
금천구	2,866,765	200,565	1,092,105	1,574,095	944,457	629,638	60
영등포	4,524,124	316,517	2,450,422	1,757,185	702,874	1,054,311	40
동작구	4,705,430	329,202	2,994,632	1,381,596	690,798	690,798	50
관악구	4,263,965	298,316	1,795,952	2,169,698	1,301,819	867,879	60
서초구	898,517	62,862	85,073	750,581	225,174	525,407	30
강남구	5,626,223	393,622	2,343,254	2,889,347	1,444,674	1,444,674	50
송파구	4,263,398	298,276	2,726,946	1,238,176	371,453	866,723	30
강동구	1,395,400	97,625	536,702	761,073	304,429	456,644	40

※ 참고2. 각 자치구의 의견 내용(보건복지위원회 조사, 총 25개구 중 5개구에서 의견 제출함)

구분	제 시 의 견
강서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구의 경우 재정여건이 개선될 때 까지는 현행대로 시비를 전액 부담하는 단서 조항 추가 -현재 분담금을 확보 또는 확보 가능한 자치구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단서조항 추가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등에 따라 부담율을 단순 책정하기 보다는 우리구 같은 특수한 지역의 사정을 고려한 가중치 적용 -별표에 의한 분담비율의 일괄 적용이 아닌 매년 조정이 필요 -위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안 통과 시 2012. 1. 1.자로 시행
용산구	-단순히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부담 증가를 사유로 이를 재정여건이 훨씬 열악한 각 자치구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함.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 구비부담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조례제정을 반대함
송파구	-기존대로 서울시에서 일괄부담 건의 -자치구 부담이 필요할 경우, 연차별 자치구 부담비율 점증 (1년차 20%, 2년차 30%, 3년차 40% 등) -시행시, 시비부담을 보다 적은 비율로 자치구 부담 최소화(시:구=80:20)
금천구	-현재 예산 확보되어 있지 않아 추경예산에 편성할 예정임 -우선 시에서 부담하고 예산편성 후 자치구가 일부부담(전분기 미입금액 포함)
강남구	자치구 재정 여건을 감안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 본 조례안의 제출일은 2011년 1월 31일임. 2011년 예산편성은 조례에 근거하여 편성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이전에 편성되어있음. 집행부는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듯이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리를 해주길 바람.
- 답변 : 2011년 예산은 가편성한 것임. 조례 미제정에 따른 예산편성에 대한 지적의 취지를 잘 알고 있음.
- 질의 : 노인장기요양보험비용부담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서울시간의 비용분담 내역이 어떤지 답변요망.

- 답변 : 현재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는 총 8113명으로, 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가 7,499명, 92.4%고, 그 외 의료급여자가 614명, 7.56%를 차지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시에서 전액 부담하지만, 의료급여자의 경우 국가가 45%, 지방자치 단체가 45%, 본인이 10%를 부담하고 있음.
이를 금액으로 말하면, 서울시가 877억을 부담하고 국가는 28억을 부담하여 서울시는 96.85%를, 국가는 3.15%를 부담하고 있음. 따라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있음.
- 질의 : 장애인연금비용도 국가가 50%를 지원하고 있고, 저소득층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들에서도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은 당연함.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만 지방정부에게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관련법 입안당시 서울시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였는지 답변요망.
- 답변 : 중앙과 지방간의 비율분담이 최소한 50% 이내로 이루어져야한다고 봄. 그러나 입법당시의 관련 사항들을 찾을 수가 없고,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입법단계에서 지방이양 사업으로 내려보내는 분권교부세 항목에 포함 시키면서 국가는 이에 상응하는 분담을 하고 있다고 간주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차원에서 역을한 면이 있음.
- 질의 : 현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토목공사 분야에 예산을 쓰면 서도 이처럼 중앙정부 책임의 사회복지비용을 자치구에 부담을 넘기고 있고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장들도 크게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지금이라도 강력한 항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며, 향후 집행부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봄.
- 질의 : 그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음으로써 어느정도의 예산부족이 예상되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요망.
- 답변 : 수정안이 가결될 경우, 당초 계상보다 11억 정도가 부족함. 이 정도면 사업조정을 통해 대안 마련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1조

나. 예산조치 : 87,726백만원 중 시비 79,630백만원 확보

다. 기타사항

- 입법예고 (2010. 9. 16.~ 10. 6.)
-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24 관련
----------	-----------

제안일자 : 2011년 07월 07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자치구의 재정 부담 과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에 대한 시비 부담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조례안의 “별표”의 제목 중 “제2조”를 “제3조”로 자구수정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안 제3조 제1항의 “별표” ‘재가급여 시비부담 비율’에서 자치구의 재가급여 비율 등간격을
3%미만, 3~5.5%미만, 5.5~8%미만, 8%이상으로 조정하여, 시비 부담율을 30%에서 86%까지로
수정함.
- 안 “별표”의 제목 중 “제2조”를 “제3조”로 자구수정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1조
- 나. 예산조치 : 2011년 예산 반영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제1항의 “별표”의 ‘재가급여 시비부담 비율’ 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목 중 “제2조”를 “제3조”로 한다.

[별표] 재가급여 시비부담 비율 (제3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② 자치구의 재가급여 비율			
		100분의 3 미만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5 미만	100분의 5.5 이상 100분의 8 미만	100분의 8 이상
①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100분의 75이상	100분의 30	100분의 40	100분의 50	100분의 60
	100분의 55이상 100분의 75미만	100분의 43	100분의 53	100분의 63	100분의 73
	100분의 55미만	100분의 56	100분의 66	100분의 76	100분의 86

수정안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비용의 부담)① “별표”							제3조(비용의 부담)① “별표”						
재가급여 시비부담 비율(제2조제1항제2호 관련)							재가급여 시비부담 비율(제3조제1항제2호 관련)						
		② 자치구의 재가급여 비율							② 자치구의 재가급여 비율				
구 분		100분의 3 미만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6 미만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9 미만	100분의 9 이상		구 분		100분의 3 미만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5 미만	100분의 5.5 이상 100분의 8 미만	100분의 8 이상	
① 자치구의 기준재정 수요 충족도	100분의 75이상	100분의 30	100분의 40	100분의 50	100분의 60		① 자치구의 기준재정 수요 충족도	100분의 75이상	100분의 30	100분의 40	100분의 50	100분의 60	
	100분의 55이상 100분의 75미만	100분의 40	100분의 50	100분의 60	100분의 70			100분의 55이상 100분의 75미만	100분의 43	100분의 53	100분의 63	100분의 73	
	100분의 55미만	100분의 50	100분의 60	100분의 70	100분의 80			100분의 55미만	100분의 56	100분의 66	100분의 76	100분의 86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부담금 중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 상호간에 분담할 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담금”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시설급여”란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한다.
3. “재가급여”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등 일정기간 또는 일정시간에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한다.
4. “관리운영비”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경비 등 제반 운용비를 말한다.

제3조(비용의 부담)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시”라 한다)와 자치구가 상호 분담하는 부담금 중 시에서 부담(이하 “시비부담”이라 한다)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시설급여 및 공단 관리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부담한다.
2. 재가급여에 대하여 시가 부담하는 비율은 별표와 같다.

② 자치구는 부담금 중 제1항의 시비부담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비로 부담(이하 “구비부담”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비 부담비율의 통보)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회계연도의 시비부담 및 자치구별 구비부담의 비율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시비부담 및 구비부담 비율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확보 및 예산계상) ① 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비부담 비용을 확보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구비부담 비용을 확보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부담금 고지 및 납부) ① 제4조에 따른 부담금 결정액을 통보받은 구청장은 분기별 부담금을 매분기 첫달 10일까지 시 수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분기 첫 달 20일까지 해당 부담금을 공단의 수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구비부담 비율에 대한 이의신청) ① 구청장은 별표에 따라 산정한 해당 자치구의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또는 재가급여 비율의 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해당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재가급여 시비부담 비율(제3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② 자치구의 재가급여 비율			
		100분의 3 미만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5 미만	100분의 5.5 이상 100분의 8 미만	100분의 8 이상
①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100분의 75이상	100분의 30	100분의 40	100분의 50	100분의 60
	100분의 55이상 100분의 75미만	100분의 43	100분의 53	100분의 63	100분의 73
	100분의 55미만	100분의 56	100분의 66	100분의 76	100분의 86

산출방법

$$\text{①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 \frac{\text{기준재정수입액}}{\text{기준재정수요액}} \times 100\%$$

$$\text{② 자치구의 재가급여 비율} = \frac{\text{자치구 재가급여액}}{\text{전체 재가급여액}} \times 100\%$$

※ 비고

1.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은 각각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자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재가급여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급여액을 따르며,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1월~9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